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1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7. .

발 의 자 : 정현희 · 신성봉 ·

이효상 · 황세영 의원 (4명)

1. 개정사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대형마트)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

-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(안 제13조의2제1호)
- 의무휴업일은 중구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함

(안 제13조의2제2호)

3. 근거법규

가.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

나.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구 소재지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 매출액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
2. 의무휴업일 :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〈신설〉</p>	<p><u>제13조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</u>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 소재지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2. 의무휴업일 :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916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2. 7. 2.(월)
- 제출자 : 정현희 의원 외 3명
- 위원회 회부 : 2012. 7. 4.(수)
- 위원회 심사 : 2012. 7. 24.(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정현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대형마트)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

-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(안 제13조의2제1호)
- 의무휴업일은 중구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

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함(안 제13조의2제2호)

4. 검토보고(전문위원 노용주)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를 살펴보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재량을 부여하는데 법 제1항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한 필요한 사항(서울행정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세부적인 절차, 방법, 기준 등으로 표현함)을 반영하고 지켜서 영업시간제한 범위와 의무휴업일을 결정하고 행정 처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.
- 그러나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항에서 규정한 “필요한 사항”에 대한 규정은 없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조례로 정한 내용만 있습니다.
- 의원님들께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.

5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○ 수정사유

당초 발의안이 최근 행정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자치구의 조례안과 주요내용이 동일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에 있어 구청장의 파단과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수정가결함

개정안	수정안
<p>제13조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 소재지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2. 의무휴업일 :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	<p>제13조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실태조사 : 평일, 토요일 및 일요일에 대한 최근 1개월간의 매출액자료를 대규모점포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매출액을 조사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규모점포등이 매출액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,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자에게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에게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2. 의견청취 :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<p>②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. (단,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”)</p>